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5. 박정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3차 전체회의(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현의원)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과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시설·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서기영)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총포뿐 아니라 화약류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포 안전관리 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화약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제3조의2에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나 화약류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두지 않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화약류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포 안전관리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위험 방지와 공공안전 유지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경찰청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화약류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함) 판매업의 허가과 변경허가를 구분하고 판매소의 구조·시설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되는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① 총포 중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제외한 총포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시설 등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판매업 허가규정과 판매업 변경허가 규정을 분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형사처벌의 기준과 관련하여 경미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허가사항 위반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형량을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무부는 경미한 부분의 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판매업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 폐기, 운반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화약류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경찰청장의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화약류의 발파·연소·폐기·운반은 전문·기술적 분야로서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화약류 등과 같은 위험물질의 안전 문제는 공공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규제 기준을 국무회의를 통해 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화약류 관련 기술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하는 것 뿐 아니라 같은 법규명령이지만 대통령령보다는 절차가 간소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어떤 방안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최신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취급 사항을 고시로 정하게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조은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9건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